



금융감독원

보 도 자 료

금융은 **통통**하게 소비자는 **행복**하게

보도	2026.6.24.(수) 조간	배포	2026.6.23.(화)	
담당부서	금융투자검사2국 자산운용기획조정팀	책임자	국 장	최상두 (02-3145-7690)
		담당자	팀 장	이진태 (02-3145-7620)

비상장주식 투자해준다더니 내 돈은 어디로? 금융회사라고 해도 일단 의심하세요.

- 일부 금융사의 해외 비상장주식 및 공모주 투자 명목의 투자금 편취 관련 소비자 경보 -

■ 소비자경보 2026 - 18 호

등급	주의	경고	위험
대상	금융소비자 일반		

소비자경보 내용

- 최근 투자자문사(이하 “자문사”) 또는 자산운용사(이하 “운용사”) 등이 해외 비상장주식 투자나, 국내 공모주 청약 대행 목적으로 투자금을 유치한 뒤 편취하는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.

- ✓ (사례1) 자문사 A가 글로벌 투자사와의 독점계약을 통해 해외 비상장주식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고 투자금을 모집하였으나, 관계사 지분 취득 등으로 투자금 운용(실제 해외 비상장주식 투자 내역은 확인되지 않음)
- ✓ (사례2) 운용사 B 및 자문사 C는 기관 명의의 공모주 청약 대행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투자금을 유치한 뒤 편취

- 그러나, 제도권 금융회사라도 집합투자업이나 투자중개업 인가 없는 위와 같은 행위는 엄연히 **불법**입니다.

- 특히 투자일임자산인 경우, 자신의 명의가 아닌 **회사**(또는 타인) **명의**의 **계좌**로 **송금**을 요구하는 것은 **불법**이므로 **각별히 유의**하세요.

<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 >

- 1 자문사가 고객으로부터 투자금을 모집 및 보관하고 이를 운용(투자)하는 행위는 **불법**이니 불법이 의심되면 즉시 거래를 중단하시기 바랍니다!
- 2 자문·운용사가 회사 명의로 고객 공모주 투자를 대행하는 계약은 **불법**이며, 투자일임재산은 반드시 **고객명의**의 계좌에서 운용되어야 합니다!
- 3 금융회사와 모바일 앱 등 전자적 수단을 통한 금융계약 체결 시에는 **계약서**를 반드시 요청하고 **계약내용**을 **확인**하세요!

I. 소비자경보 발령 배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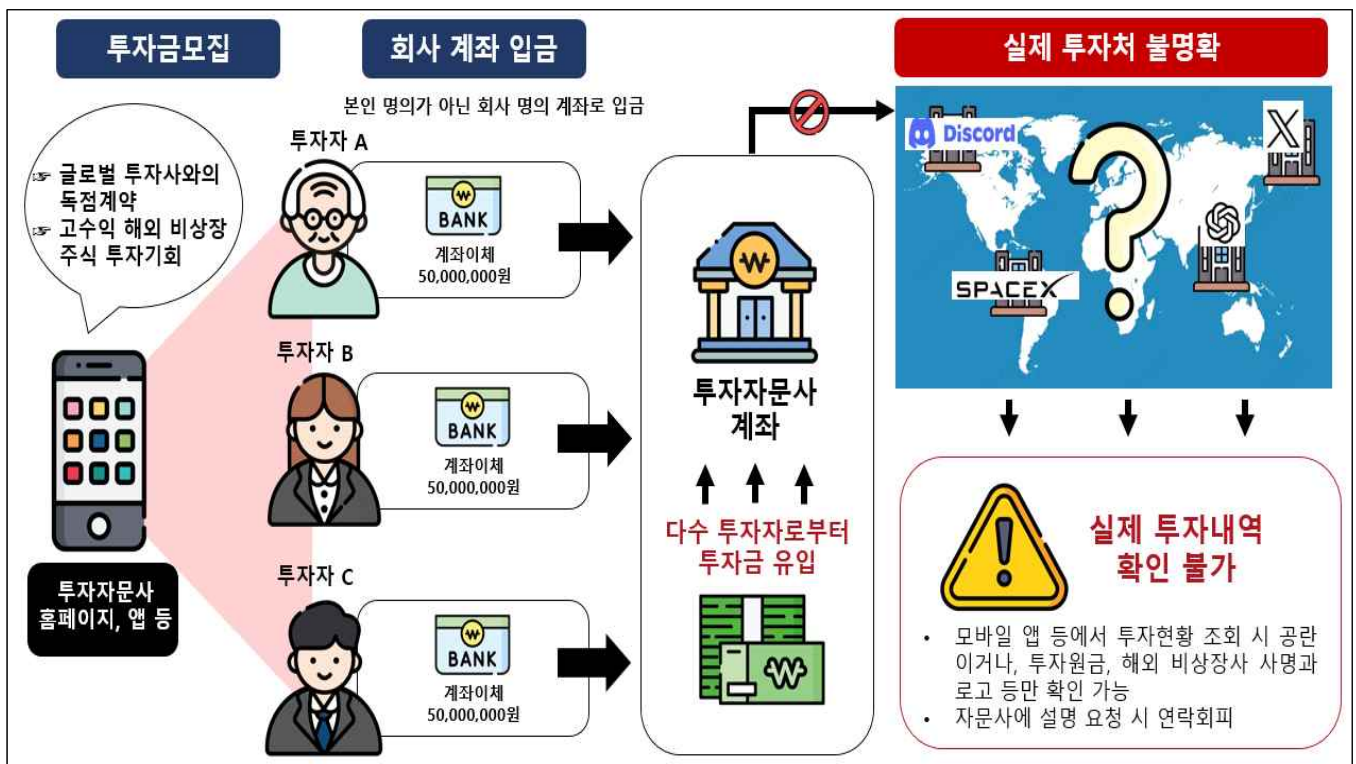
- 최근 일부 자문사 또는 운용사가 ①해외 비상장주식에 투자하거나, ②회사 명의의 공모주 청약 대행 후 수익금 분배 목적으로 투자금을 유치하였으나
- 이후, 투자자에게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거나, 투자현황 (종목, 금액 등) 관련 문의시 설명해 주지 않는다는 민원이 다수 발생하였습니다.

- ⇒ 투자중개업이나 집합투자업 인가 없이, 회사 명의로 투자금을 입금 (불건전 영업행위)받고 자금을 모아 운용(무인가 집합투자업)하는 행위, 회사가 공모주 청약을 대행(무인가 투자중개업)하는 행위는 엄연히 불법임에도
- 중시 호황기를 틈타 제도권 금융회사라는 점을 이용하여 투자자를 현혹하는 행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합니다.

II. 주요 소비자 피해 사례

※ 금융감독원에 제출된 민원서류 등 기반으로 작성

가 해외 비상장주식 투자 관련 A 사례



① **(글로벌 투자사와의 독점계약 강조)** 회사(자문사)는 제도권 금융회사임을 내세우며, 글로벌 투자사와 독점계약을 통해 해외 비상장주식에 특별한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고 투자자를 유인합니다.

② **(고수익 제시)** 회사는 해외 비상장주식 투자를 한 이력이 없음에도 근거 없이 과도한 수익률*을 제시하며, 투자자를 현혹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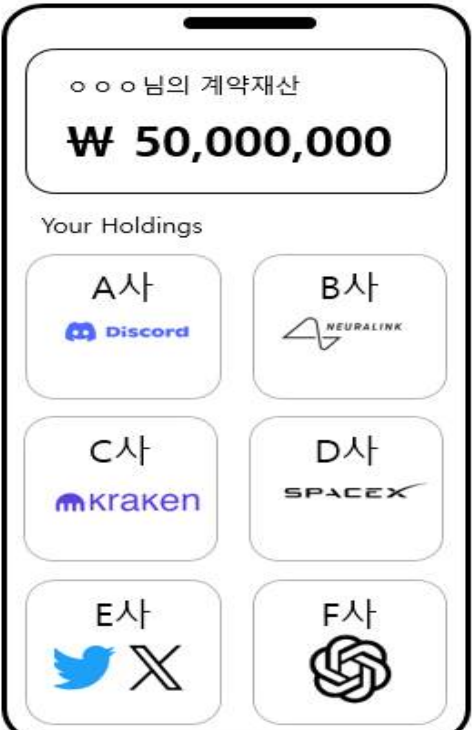
* 3년 이상 중장기투자(해외 비상장회사 상장 및 투자금 회수)로 약 3~5배의 수익 예상된다고 홍보

③ **(회사 계좌로 자금 모집)** 자문사가 투자자로부터 금전 등을 예탁받는 행위는 불법임에도 회사 명의 계좌로 투자금을 모집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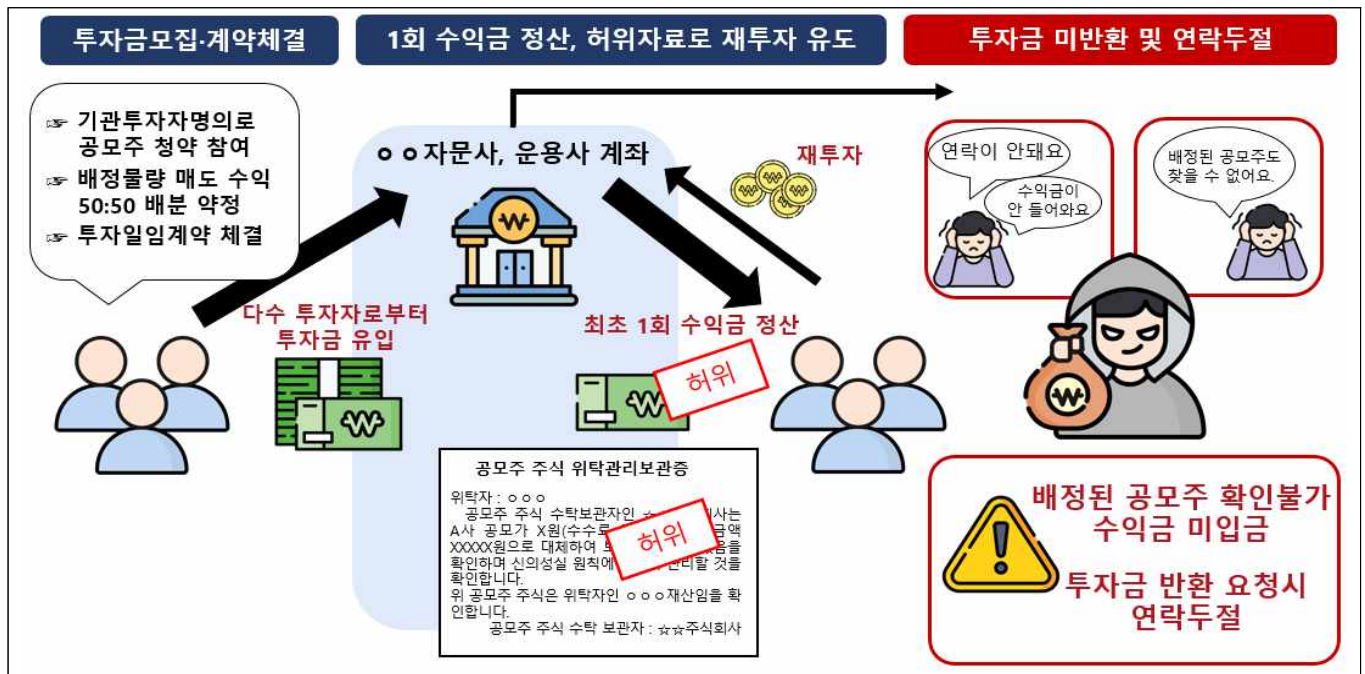
④ **(계약서 미제공)** 이후 모바일 앱·홈페이지 등에서 실제 투자계약 내용을 열람할 수 없고* 투자계약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.

* 회사와 고객간 계약서 양식만 조회 가능하고 실제 계약 내용은 열람 불가

⑤ **(투자현황 미제공)** 모바일 앱 등의 투자 현황 화면이 공란이거나 회사가 임의로 작성한 계약내용(투자원금, 해외 비상장사 로고 등) 만을 이미지로 보여주는 등 실제 투자내역은 확인이 불가능합니다.

< 모바일 앱 등의 투자 기회 홍보 화면 >	< 모바일 앱 내 '투자 현황' 화면 >
	

나 공모주 청약 대행 관련 B,C 사례



- (공모주 물량·고수익 보장 홍보)** 회사는 개인이 아닌 기관투자자로 청약*시 증거금을 납입하지 않고, 개인투자자보다 많은 물량을 배정받고 고수익이 보장된다고 홍보하며 투자금을 모집합니다.

* 기관투자자의 전문적인 가격분석 능력이 적정 공모가 발견에 기여하는 점을 감안하여 수요예측 참여 기관투자자는 통상 배정물량이 개인보다 많고 청약증거금도 불필요

- (계약 체결 및 자금 모집)** 기관투자자라도 타인의 자금(계산)으로 청약에 참여할 수 없으나, 회사 명의로 참여 후 배정물량 매도 수익을 50%씩 배분한다는 내용의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 회사계좌로 투자금을 입금받습니다.

- (미끼성 수익금 정산 및 허위 서류 제공)** 주로 최초 1회는 수익금을 정산하여 신뢰를 얻고, 이후 허위*로 작성한 ‘공모주 배정표’ 및 ‘수익금 정산내역’을 제시하면서 재투자를 유도합니다.

* 실제로는 해당 공모주에 청약을 하지 아니하여 배정내역이 없거나, 배정받은 수량이 소량임에도 많은 물량이 배정된 것처럼 기재 ⇨ 투자수익이 상당한 것으로 오인

- (투자금 미반환)** 이후 배정된 공모주가 확인되지 않거나 수익금이 입금되지 않아 투자자가 투자금 반환을 요청하지만, 회사는 연락이 닿지 않거나 차일피일 반환을 미루는 상황이 됩니다.

Ⅲ.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

① 자문사가 고객으로부터 투자금을 모집 및 보관하고 이를 운용(투자)하는 행위는 불법이니 불법이 의심되면 즉시 거래를 중단하시기 바랍니다!

- 자문사는 고객에게 종목 추천, 포트폴리오 구성 전략 제시 등 자문만을 제공할 수 있음에도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보관 및 예탁하는 것은 불법*이고
 - 집합투자업 인가 없이, 자문사가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 등을 운용(투자)하여 투자자에게 수익을 배분하는 행위는 불법**입니다.

* 「자본시장법」 제98조제1항(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), ** 「자본시장법」 제11조(무인가 영업행위 금지)

- 불법이 의심되는 경우 즉시 관련 거래를 중단하고 신속히 금융감독원(☎1332, 홈페이지)에 제보하거나 경찰(☎112)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.

② 자문·운용사가 회사 명의로 고객 공모주 투자를 대행하는 계약은 불법이며, 투자일임재산은 반드시 고객 명의 계좌에서 운용되어야 합니다!

- 금융회사 등 기관투자자에 한해 공모주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으며, 개인투자자가 회사 명의(자문사·운용사)로 공모주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다는 공모주 투자대행은 무인가 투자중개업으로 불법*입니다.

* 「자본시장법」 제11조(무인가 영업행위 금지)

- 투자일임재산은 반드시 증권사 등 금융회사(증권사 등)에 개설된 고객 명의의 계좌에서 운용되어야 하며, 회사 명의 계좌로 투자금 송금 요청시 송금을 거부하시기 바랍니다.

③ 금융회사와 모바일 앱 등 전자적 수단을 통한 금융계약 체결 시에는 계약서를 반드시 요청하고 계약내용을 확인하세요!

- 금융회사가 소비자와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류를 제공*하여야 합니다. * 「금융소비자보호법」 제23조(계약서류의 제공의무)
- 모바일 앱 등 전자적 수단을 통한 금융계약 체결 시 금융회사가 계약서를 제공하지 않으면 계약서를 반드시 요청하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IV. 향후 계획

- 일부 운용사·자문사가 제도권 금융회사라는 점을 악용하여 자금 모집, 보관 및 운용, IPO 공모주 청약 대행 등 법상 허용된 업무 범위를 벗어난 불법 영업행위로 **투자자**를 **기망**하고 있습니다.
 - 금융감독원은 증시 호황기에 편승하여 투자자를 현혹함으로 투자금을 편취하려는 금융사의 **불법행위 소치**에 **엄정 대응**할 것이며, 불법행위 징후가 높은 자문사·운용사에 대하여 하반기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.
 - 불법행위 적발시 즉각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일벌백계함으로써 **추가 피해 방지**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 - 한편, 금융소비자께서도 유사한 투자권유를 받거나, 의심사례를 확인하는 경우, 즉시 거래를 중단하시고, 신속히 금융감독원에 **제보*** 또는 경찰에 **신고**하시기 바랍니다.
- * 금감원 홈페이지(www.fss.or.kr) → 민원·신고 → 민원신청으로 증빙자료와 함께 제보
- 신속한 제보·신고를 통해서만 범죄수익 은닉을 방지하고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.